

## **Young Investigator Travel Grant 규정**

### **제1조 (목적)**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함량을 육성하고 연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

### **제2조 (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Young Investigator Travel Grant" 이라 한다.

### **제3조 (받는 사람 또는 과제)**

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1명 이상으로 하되, 업적이나 적합성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 **제4조 (지급 대상자의 자격)**

1. 본 연구비는 내분비학회의 정회원이며 만 45세 이하의 전임의 2년차 이상, 부교수 이하 연구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2. 1항과 동시에 최근 2년이내 국제학술지에 1개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하였거나 게재예정인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수혜자는 지원을 제한한다.

### **제5조 (운영위원회)**

대한내분비학회 총무위원회(총무이사, 부총무)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선정된 연구자 및 학회 또는 연수프로그램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 **제6조 (구비서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지원)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3. 연구업적 목록표
4. 전임의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소속과장의 추천서

### **제7조 (심사)**

지원서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지원 학회 또는 연수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와 지원자의 자격 여부, 연구 업적, 연구 역량 등을 확인하여 심사 선정한다.

### **제9조 (지급)**

연구비의 경우 학회 참석 소모 비용의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상세 지급 규정은 기타 학회 참가금 지원 규정(KRPIA)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10조(수혜자의 의무)**

본 연구비 수혜자는 다음의 세가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외학회 또는 연수프로그램 참석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 수혜 이후 개최되는 연구 워크샵 (학회시기에 따라서 발표시기는 결정)에서 참석 경과(예, 연수보고회)를 보고하여야 하며 (3) 수혜 이후 만 2년 이내에 EnM 학술지에 주저자 1편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또는 EnM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타 논문들을 적어도 3편 이상 본인이 주/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타 SCI/SCIE/ESCI 논문 작성시 인용할 의무가 있다.